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2023. 06. 08



시니어캐슬 요양원

SENIOR CASTLE | CARE CENTER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보호법」 관련규정에 의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시설 내 설치되는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및 영상정보 보호에 대해 요양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 저장 · 편집 · 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니어캐슬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시설장 (한효정)

「책임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요양원의 장을 말한다.

나. 관리책임(운영)자: 사무국장 (윤병호)

「관리책임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자, 또는
업무담당자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업무담당(모니터링)자: 사회복지사 (주명자)

「업무담당자」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의 업무를 직접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1. 시니어캐슬요양원 CCTV는 총 65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가. 침실 36대, 공동거실 5대, 복도 12대

나. 공용공간 6대 (프로그램실 2대, 물리치료실 1대, 현관입구 1대, 식당 1대, 엘리베이터 1대 등)

다. 기타 6대(산책로 외)

2.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출입구 및 각 층에 설치한다.

3.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각 층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가. CCTV 운영 모니터

나. 디지털 녹화기

다.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안내판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판이 훼손된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동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의 성명(또는 회사명) 및 연락처

제8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시니어캐슬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각층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영상정보 열람 및 이용

제9조(영상정보 관리대장)

영상정보의 열람, 이용제공, 삭제 시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1.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관리책임자 임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가. 방법, 시설보호, 화재와 관련하여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나. 정보주체가 열람 요구한 경우
 - 다. 다른 법률에 의해 필요한 경우
 - 라. 개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제2호의 경우 열람 등의 방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관리책임자에게 열람 등을 요청하고, (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가.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 다.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마.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5.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7.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정보 주체가 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가.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 1)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 2)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에 한한다.
 - 나.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다. 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 라. 정보주체의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관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영상정보관리대장에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 마. 정보주체가 자신의 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 후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파기 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영상정보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4호에 따른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거부의 구체적 사유를 별지 서식 제4호(영상정보 관리대장)의 ‘이용제공 근거’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 가.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다. 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라. 기타 책임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경우
 - 마.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책임자가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 자의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정보주체 이외 자의 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제12조(영상정보의 이용·제공)

1.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 가. 요청의 법령상 근거 또는 이용목적
 - 나. 요청 목적에 따른 제공 항목의 적정성
 - 다. 적절한 보안대책 등
2.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을 준용한다.
3.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 이후 파기 등의 결과를 제공자로부터 회신받고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파기 등의 처리 결과와 처리일자를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영상정보 이용·제공의 제한)

관리책임자 등은 영상정보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장 보칙

제14조(사무의 위탁)

1.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 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 등을 준용한다.

CCTV 설치 현황

설치위치	카메라 대수	촬영범위	촬영기간
침실	36대 (각 1대)	침실전체	24시간/녹화
공동거실	5대	각층거실	24시간/녹화
물리치료실	1대	물리치료실	24시간/녹화
복도	12대	각층복도	24시간/녹화
프로그램실	2대	프로그램 공간	24시간/녹화
현관입구	1대	현관 입출입	24시간/녹화
식당	1대	식당	24시간/녹화
엘리베이터	1대	엘리베이터 안	24시간/녹화
기타	6대	산책로 외	24시간/녹화
총 설치대수	65대		

목 적: 수급자 안전, 요양시설 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책임자: 시 설 장 한효정 (연락처: 031-286-1070)

운영자: 사무국장 윤병호 (연락처: 010-9586-1070)